

**왕 길 검 단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6. 05.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주)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 사업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인 북인천IC가 위치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인천시 전역, 서울시, 경기도를 배후지역으로 하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
- 또한, 검단신도시, 검단도시개발구역,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하여 개발되고 있어 이들 주변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내 무분별한 공장입지 및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진행중임.
-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서구 및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 및 재정자립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

1.1.2 사업의 목적

-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 수도권 서부지역에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 서구 및 인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재정자립도 확충
- 계획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인천광역시 내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의 합리적 재배치 및 계획적 개발 유도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53,876㎡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2항 관련 [별표 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생략하였음.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특례)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u>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u>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②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로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3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내용을 공개함.

1.4 추진경위

- 2012. 11. 12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공업용지)
- 2012. 12. 24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공급계획 반영 고시(市)
- 2014. 02. 28 : 1차 투자의향서 작성 및 접수
- 2014. 04. 01 :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회신
- 2015. 04. 06. : 2차 투자의향서 작성 및 접수
- 2015. 11. 05. :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신청
- 2015. 11. 30. :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가화예정용지(주거))
- 2015. 12. 14. :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제외
- 2016. 01. 15. : 2016년도 제1차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개최
- 2016. 01. 20. : 2016년도 제1차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결과(지정)
- 2016. 01. 25. :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제10호)
- 2016. 04. 12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1.5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5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3,876㎡
- 사 업 자 :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주)
- 총사업비 : 1,315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1.5.1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됨.

〈표 1.5.1-1〉 용도지역 계획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53,876	-	253,876	100.0	-
도 시 지 역	공업 지역	소 계	-	증)253,876	253,876	100.0	-
		일반공업지역	-	증)247,348	247,348	97.4	-
		준공업지역	-	증) 6,528	6,528	2.6	-
	녹지 지역	소 계	253,876	감)253,876	-	-	-
		자연녹지지역	253,876	감)253,87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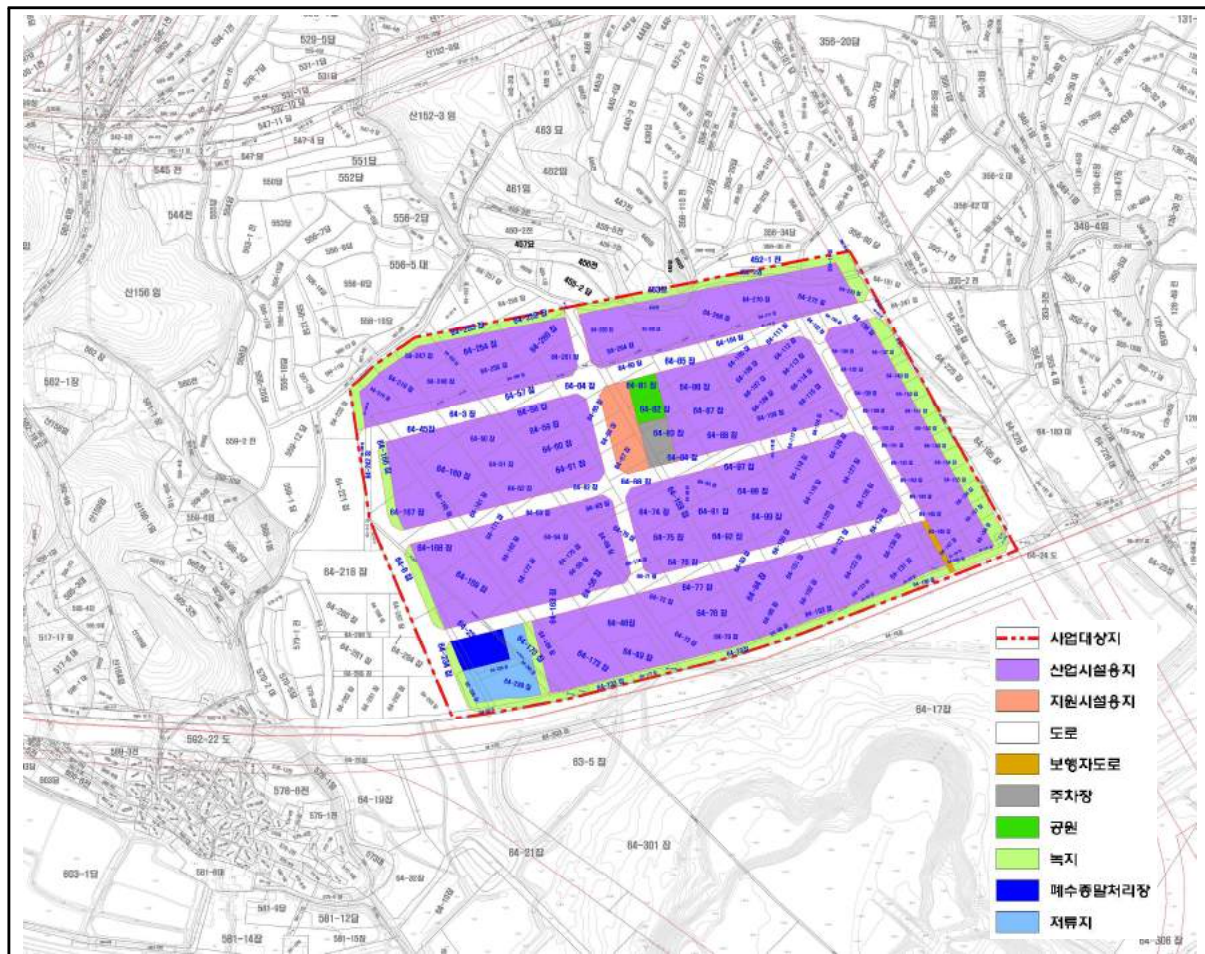
(그림 1.5.1-1) 용도지역 계획도

나. 토지이용계획

- 총면적 253,876㎡ 중 산업시설용지 174,210㎡(68.7%), 지원시설용지 3,308㎡(1.3%), 공공시설용지 76,358㎡(30.0%)로 계획됨.

〈표 1.5.1-2〉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53,876	100.0	—
산 업 시 설 용 지		174,210	68.7	—
지 원 시 설 용 지		3,308	1.3	—
공 공 시 설 용 지		76,358	30.0	—
공원, 녹지	도 로	45,509	17.9	—
	주차장	1,615	0.6	—
	소 계	23,234	9.1	—
	공 원	1,605	0.6	—
	녹 지	21,629	8.5	—
	폐수처리시설	2,000	0.8	—
저 류 지		4,000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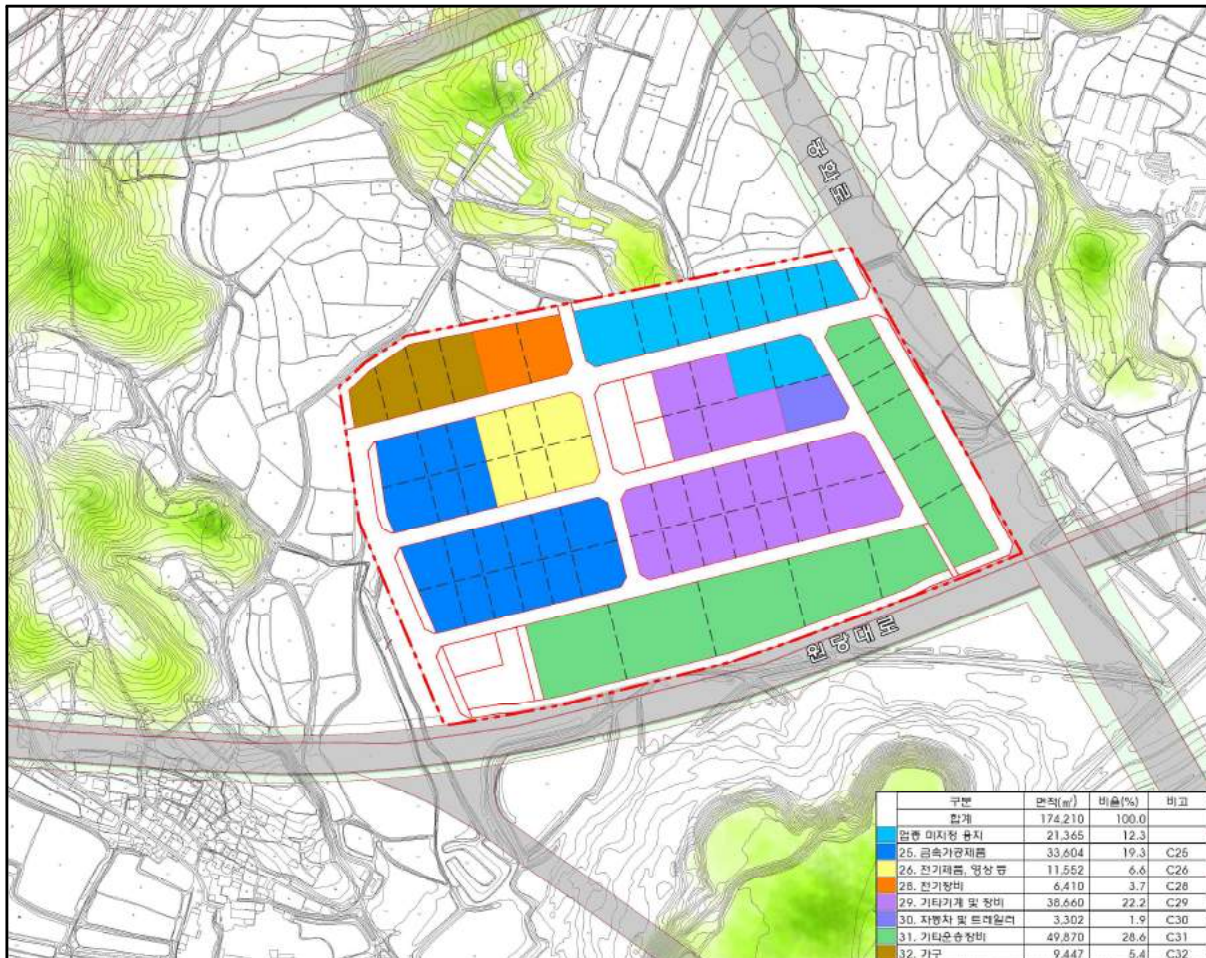


(그림 1.5.1-2) 토지이용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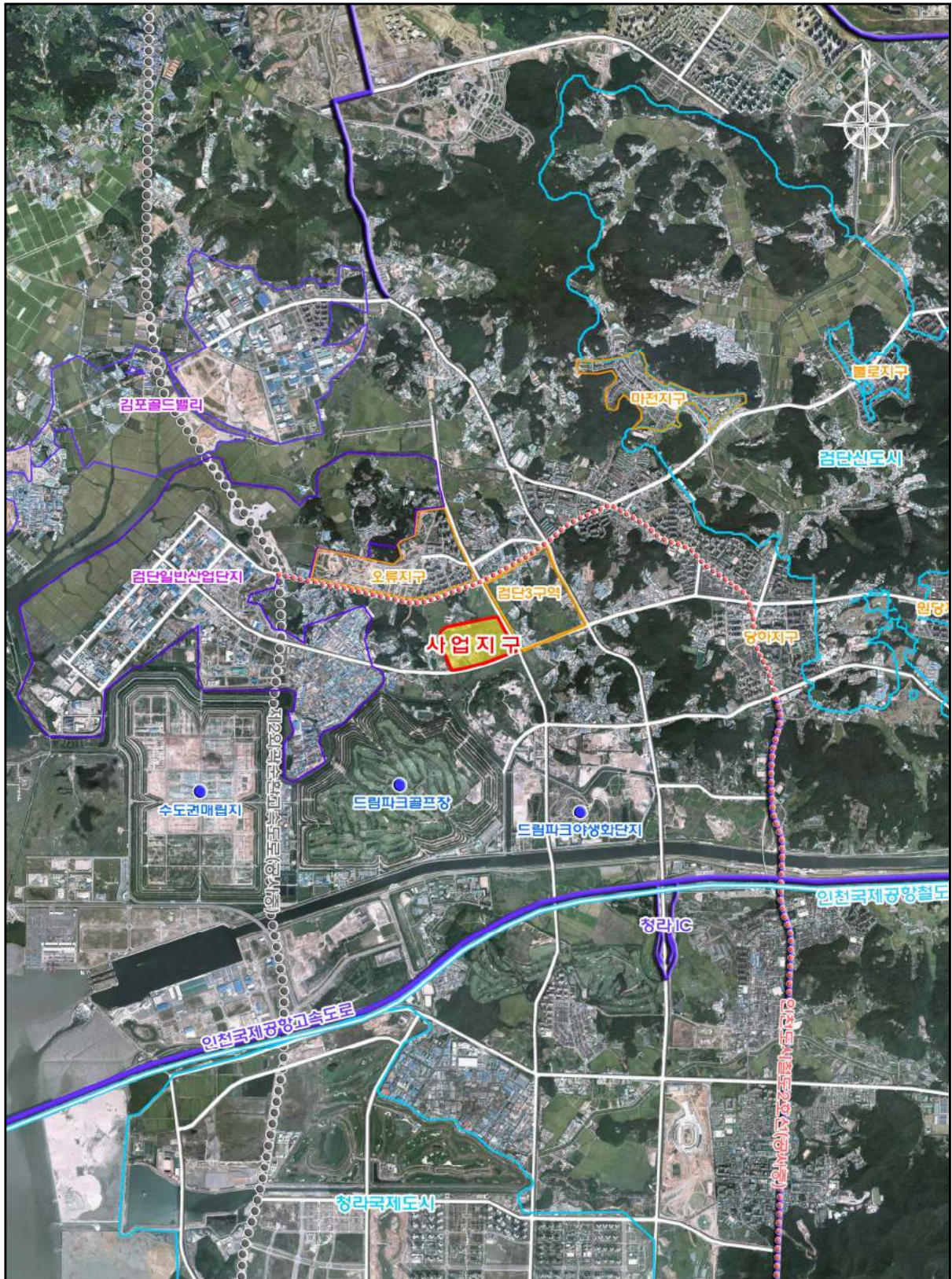
다. 주요유치업종

〈표 1.5.1-3〉 주요유치업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74,210	100.0	—
일 반 제 조 업	업종 미지정 용지	21,365	12.3	—
	C25. 금속가공제조업	33,604	19.3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552	6.6	—
	C28. 전기장비 제조업	6,410	3.7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660	22.2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02	1.9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9,870	28.6	—
	C32. 가구 제조업	9,447	5.4	—



(그림 1.5.1-3) 업종별 배치 계획도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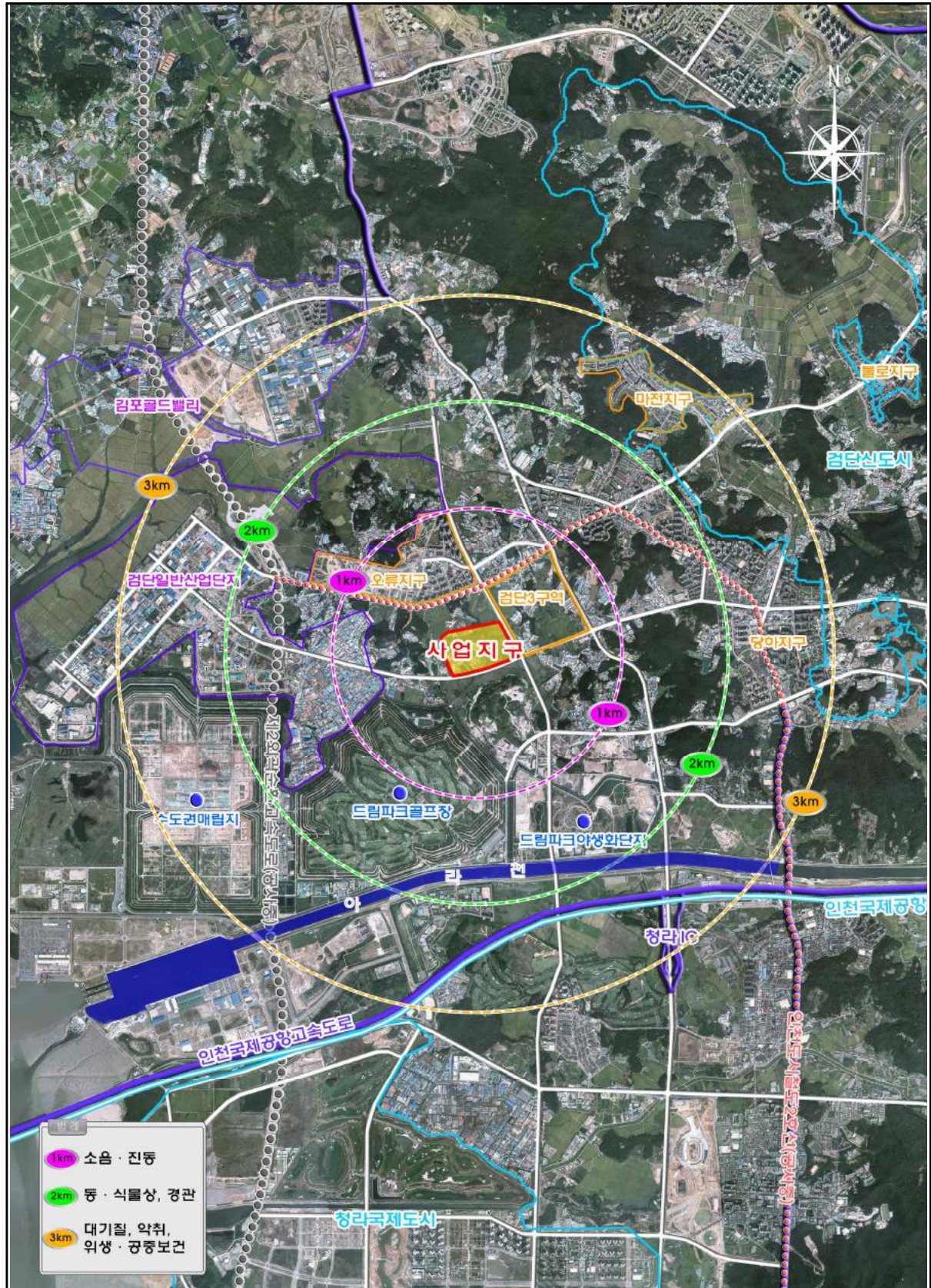
-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59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1-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지역	비 고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서식지 훼손 및 동·식물상 등 변화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공사시 운영시
대 기 환 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사업지구 및 인천광역시	-
	대 기 질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운영시 연료사용 및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	공사시 운영시
	악 취	◦운영시 공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발생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운영시 산업단지 시설물, 연료 등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사업지구 내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비 고
수 환 경	수 질	◦공사시 토공작업에 따른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하천수계 ◦운영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수계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아라천)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공사시 및 운영시 부지조성에 따른 홍수유출량 등 수리·수문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토양오염 유발 ◦운영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사업지구 내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공사시 절·성토 등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장비사용, 투입 인력 등에 따른 각종 폐기물 발생 ◦운영시 공장, 지원시설 등에서 각종 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내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운영시 공장가동,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공사시 운영시
	경 관	◦부지조성 및 산업단지 시설물 입지로 인한 Sky Line 등 경관 변화	◦사업지구 중심으로부터 2.0km (근경 0.5km, 중경 1.0km, 원경 2.0km)	운영시
	위생· 공중보건	◦산업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건강영향(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km	운영시
	빛공해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빛공해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 회 경 제 환 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의 변화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운영시
	산 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운영시



(그림 2.1-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2호」 및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2011.12, 환경부) [붙임2]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선정 참고자료를 참고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표 3.1-1>과 같이 자연생태환경 2개 항목, 대기환경 4개 항목, 수환경 2개 항목, 토지환경 3개 항목, 생활환경 5개 항목, 사회·경제환경 2개 항목을 설정함.

<표 3.1-1> 평가범위 선정구분 및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항목		선정구분			선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 생태 환경	동 · 식 물 상	○			◦공사시 및 운영시 동·식물상 영향예상
	자 연 환 경 자 산		○		◦주변의 천연기념물 등의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예상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의 특성 및 규모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대기질 등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변 대기질 영향 예상
	악 취	○			◦운영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 악취 영향예상
	온 실 가 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수 환경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오·폐수 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 리 · 수 문		○		◦공사시 및 운영시 우수유출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공사시 폐기물 및 폐유 발생으로 인한 토양환경영향
	지 형 · 지 질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사유출, 사면발생
생활 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공사시 투입인력 및 장비에 의한 폐기물 발생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
	소 음 · 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영향 ◦운영시 차량통행, 공장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경 관		○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위생 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
	빛 공 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
	일 조 장 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전 파 장 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 구 · 주 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 변화

3.2 평가항목별 예측·분석·평가 방법 설정

◦ 평가항목별 예측·분석·평가 방법은 <표 3.2-1>과 같이 설정 함.

<표 3.2-1> 평가항목별 예측·분석·평가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 범위	예측·분석·평가 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 · 식 물 상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사업지구의 식생보존등급, 현존식생도, 생태자연도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예측
	자연환경자산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현황 조사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인천광역시	◦인천기상대의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및 사업 지구의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분석
	대 기 질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사업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 예측모델 : CALPUFF, CMAQ 모델
	악 취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사업시행시 미치는 영향예측 - 예측모델 : CALPUFF 모델
	온 실 가 스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수 환경	수 질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아라천)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영향 및 투 입인원에 따른 오수발생량 예측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오·폐수 발생량 산정 및 처리대책 수립
	수 리 · 수 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주변 하천, 수자원이용, 우량 관측소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리·수문에 대한 영향 예측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목별 토지이용변화 및 시설물 계획
	토 양	◦사업지구 내	◦공사시 폐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지 형 · 지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문헌자료, 지질도 등을 토대로 지형 변화 등을 예측

〈표 계속〉 평가항목별 예측·분석·평가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 범위	예측·분석·평가 방법
생활 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사업지구 내	◦지장물 조사 및 폐기물 발생 현황조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 대책 수립
	소 음 · 진 동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예측방법 : 소음진동 예측식
	경 관	◦사업지구 중심으로부터 2.0km (근경 0.5km, 중경 1.0km, 원경 2.0km)	◦시설물 입지로 인한 경관변화 분석
	위 생 공 중 보 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km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
사회 경제 환경	인 구 · 주 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통계자료 및 사업분석을 통한 인구·주거 변화 예측
	산 업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통계자료 및 사업분석을 통한 산업 변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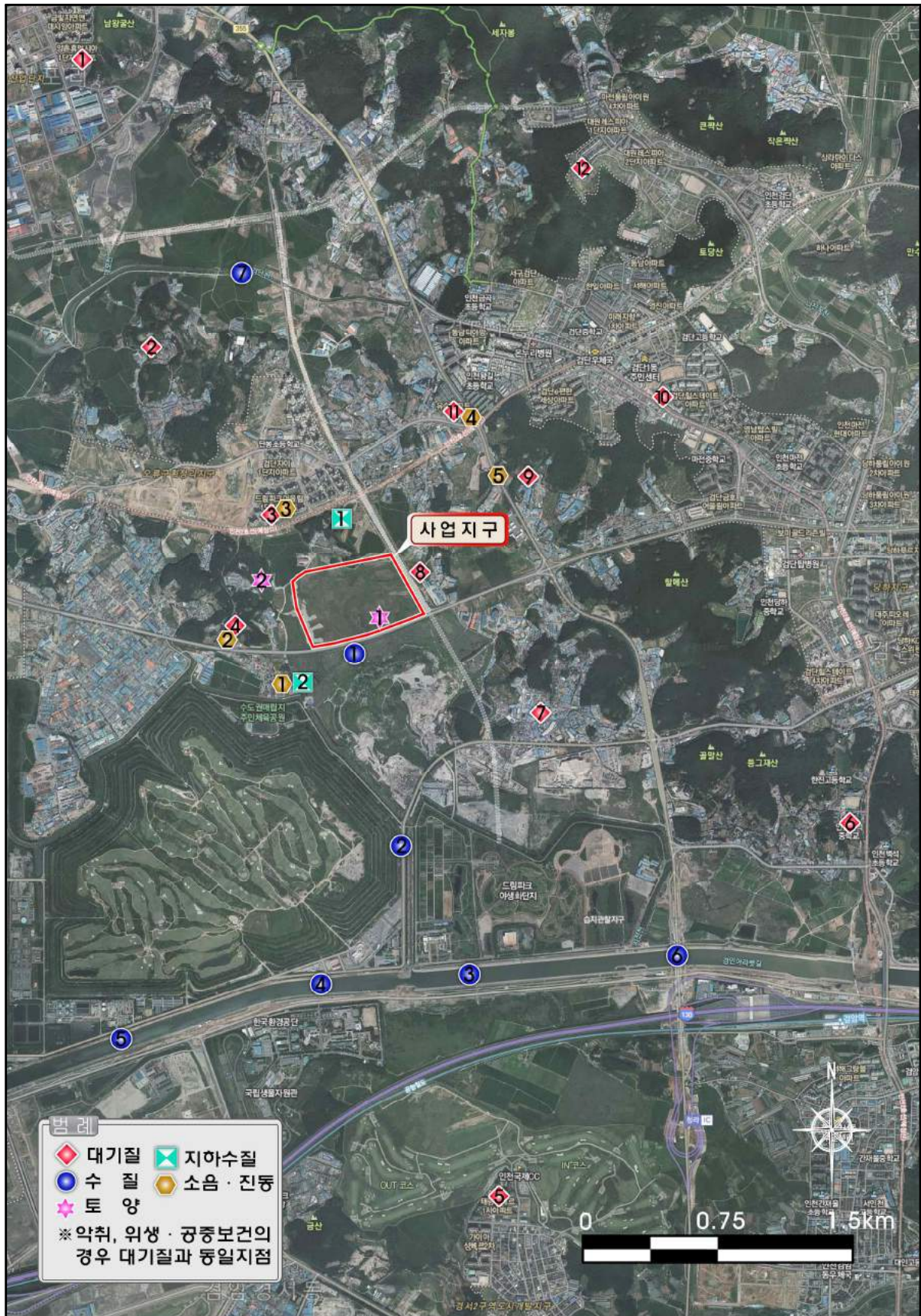
3.3 평가항목별 조사 계획

◦ 평가항목별 조사 계획은 <표 3.3-1>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3.3-1> 평가항목별 조사 계획

구 분	지점수	항 목	조사시기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포함)	-	◦육상식물 : 소산식물현황,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존등급, 특정육상식물(천연기념물,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종, 보호수 및 노거수 등) ◦육상동물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 주요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희귀종 등) ◦육수동물 : 육수생태계(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주요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희귀종 등)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기상	-	◦부지기상 및 국지기상	◦2016.07~2017.06
대기질	12지점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8개 항목)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악취	12지점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10개항목(암모니아, 메틸머 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수 질	7지점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 ABS, CN, Cd, Cr ⁶⁺ , Hg, Pb, As, PCB, 유기인 (18개 항목)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지하수	2지점	◦pH, 총대장균군, NO ₃ -N, Cl ⁻ , Cd, As, CN, Hg, 유기 인, 페놀, Pb, Cr ⁶⁺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 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 실렌(19개 항목)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토 양	2지점	◦pH, Cd, Cu, Pb, Zn, Ni, Cr ⁶⁺ , As, Hg, F, CN, Phenol, PCB, 유기인, TCE, PCE,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벤조(a)피렌(21개 항목)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소음·진동	5지점	◦소음, 진동(2개 항목)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위생공중 보건	12지점	◦비발암성 물질 - 스틸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 ◦발암성 물질 -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1차(여름) : 2016.07 ◦2차(가을) : 2016.10 ◦3차(겨울) : 2016.12 ◦4차(봄) : 2017.04

주) 대기질 3일연속 측정(시간별 측정을 실시하여 24시간 평균 산출)



(그림 3.3-1) 환경질 조사지점도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은 주민의견 제출 및 수렴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공고시점 :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장소 :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의 내용, 보고서 초안 및 초안 요약문 게시
 - 관계행정기관(인천광역시청) 정보통신망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개발계획과)

4.2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4.2.1 주민설명회

-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공람 후 10일 이내 개최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합동설명회로 진행할 계획임.
- 개최시점 :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 개최장소 :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
- 개최공고 : 설명회 개최 7일전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할 계획임.

4.2.2 주민공청회

- 개최시점 : 주민의 개최 필요의견 제출시
 -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개최장소 :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
- 개최공고 :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공고 할 계획임.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2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16. 4. 12
- 운영위원 : 위원장 포함 9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서구 도시관리국	국 장	봉종선	관계행정기관
위 원	서구 도시개발과	과 장	권순태	관계행정기관
	서구 환경보전과	팀 장	김창원	관계행정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팀 장	하은숙	협의기관 공무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두	관계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윤	관계전문가 (서면제출)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 수	정종태	관계전문가
	경인여자대학교 보건환경과	교 수	김미경	관계전문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관계전문가
	주민대표(검단5동)	통장자유회장	손윤식	주민대표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2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내용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 사업지구 인근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골드벨 리가 위치하고 있어 대기 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지역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관리권역에 속하고 있음. 특히 사업지구 인근에 오류지구, 검단3도시개발지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 ◦ 본 사업의 목적은 사업지구 주변으로 공장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지구 인근에 김포학운 2·3·4·4-1·6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등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 또는 조성예정인 산업단지들을 아우리는 김포골드벨리가 있으며 검단산업단지까지 합쳐 총 약 605만여㎡ 규모의 초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함. ◦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 파악 및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원(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에 대한 면밀한 영향 예측을 통해 동 사업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일대는 많은 산업용지가 기 운영 또는 조성중인 지역으로서 추가 공장 건설에 대한 관리(환경용량 등)가 필요한 지역으로, - 상위 도시기본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산업용지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주변 산업단지의 분양 현황, 환경적 누적영향 등을 예측·평가하여 동 계획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가정 또는 전제가 있어야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른 인천지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등 제반 환경질 및 환경관리정책에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인근 주거지(안동포지역, 오류지구, 검단3지구, 검단5지구 등)의 기존주민과 신규입주 예정자들에게 미칠 환경영향 및 환경위해요소를 면밀히 평가하고, 인근 누적적 영향 (특히 대기환경)에 대해 좀더 세밀한 검토와 예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자료는 국지기상자료의 획득과 활용임. ◦ 공원녹지가 대부분 완충녹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공원 규모에 대한 확대 조정 필요. ◦ 생태자연도 조사를 단순히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병행하여 생태자연도 조사를 추진하기 바람. ◦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나 주변이 수도권매립지등 악취 유발지역으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악취 조사 지점의 확대 필요(거주지역까지 반드시 조사)	-

심의의견	비 고
1. 총괄의견	
- 폐수처리장의 적정규모와 부지 면적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검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사례 비교 검토) -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기술 필요. - 인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필요. - 산단운영에 따른 악취, 유해물질배출 등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주업체의 업종 제한을 검토. -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 운영계획과 환경오염 저감방안 마련. - 업종선정을 단순 희망 유치업종이 아닌 주변 주거지구 보호를 위한 친환경 비공해 업종 선정. - 주거단지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경계에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 확보 방안 마련. - 동 사업계획 소재지는 오류지구, 검단3지구, 검단5지구 등 대규모 주거(예정) 지역과 인접하여 있음으로 입지여건 재검토 필요. - 주변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주변환경영향평가 누적평가를 심사 하여야 하며 객관적 예측자료 확보를 위한 평가범위, 측정지점, 측정주기 확대.	-
2.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생태계,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악취, 수질, 위생·공중보건(건강영향평가), 소음·진동, 동·식물상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 악취관리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역이므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 대기환경 영향평가와 국지기상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인근 배출원 분포, 산업단지 입지 계획, 잠재적인 피해영향권역 차원에서 대상지역 확대 검토. - 대상지역을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km는 부적정하며, 환경피해 설정을 감안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이상 검토 설정. - 평가대상지역 확대 - 자연 생태환경 대상지역 설정 및 확대 : 장축의 2배→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이상 - 소음·진동 : 500m이내→경계로부터 1km이상 - 대기질(악취포함) 1km이내→경계로부터 반경 2km이상 - 토지이용, 지형지질 : 사업지구→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2. 심의의견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 생태면적을 적용 지침(환경부, 2011)을 참조하여 생태면적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안은 2개 이상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광역적인 입지 및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현황조사와 예측에 근거하여 저감 방안과 대안 검토가 필요함.
- 대기환경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실태분석을 선행하여, 추가적인 초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등 지역에서 상습적 초과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항목의 단기농도 수준과 기준(장·단기) 초과 빈도 등을 중점검토.
- 주변 주거지 및 환경을 고려 친환경 오염원 배출이 없는 업종으로 선정 유치가 타당.
- 주거지역과 충분한 완충 마운딩 녹지로 이격거리를 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업종으로 유치업종 제한 및 악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최적 방지시설 설치와 밀폐방안 수립.
- 공사·운영시 소음 등으로 인한 동·식물상과 주변 지역주민들 위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수립.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공통사항】

-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문헌조사(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법정 보호종 서식현황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계획지역과 인접하여 검단, 양촌, 학운2·3·4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있고, 대포, 김포 3-1, 4-1·5·6 일반산업단지, 인천식품산업단지 등이 입지할 예정이므로, 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의 누적영향을 고려한 항목별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계획지역 하류 수계현황(이용 현황, 수질 상태, 유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대상범위(직·간접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수질변화 등)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 수립.
-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분석(경관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황 조사지점,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2. 심의의견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인접하여 대규모 택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고 계절별 특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누적영향을 예측·평가(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 방법)하여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업종에 대한 구체화 필요, 운영시 대기영향(악취포함), 예측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 추가 필요.
- 조사지점 선정 타당성 여부 제시
- 주변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바,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질, 악취, 수질, 건강성, 위해물질 등)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함.
- 인근 지역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파악.
- 인천광역시 비오톱조사자료와 연계한 변화 및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인근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민원 내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전제되어야 함.
(참고로 2013~2014년 비오톱조사결과 대상부지는 일부 나대지 외에는 “자생종 또는 외래종이 우점하는 자연초지”임)
- 조사계획서에 조사지점, 횟수, 시기 등 확대 추가하여 주민설명회시 이해 설득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항목 추가
- 대기질, 악취,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별 특성을 반영 최소3계절 이상 최근 조사자료를 근거로 예측
- 정온시설 위치지역(개발예정지구 포함) 대기질(악취) 및 소음·진동 조사지점 추가
- 【동·식물상】
- 생태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종다양성이 풍부한 시점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영향 범위는 최대한 고려)과 하류 수계를 포함.
- 【대기질 및 기상】
- 주변에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절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현황 분석(시간별 측정을 실시하여 24시간 평균을 산출, 맑은 날을 대상으로 측정, 학위 현황 측정도 동일하게 적용)을 실시.
- 기상자료는 가능한 주변 지역의 365일간의 부지기상 측정자료 등을 활용.
- 대기질영향평가는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포함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교통, 환경(대기) 배출원 등에 대한 예측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악취 등에 대한 연간 일평균 시간에 따른 변화 고려 검토.
- 국지기상특성을 포함한 기상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 바람.
- 수도권매립지, 검단일반산업단지 입지로 바람의 영향에 따라 대기오염 확산이 가능하므로 계절별 풍향을 고려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계절별 조사 필요.

2. 심의의견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위생·보건】 - 현황조사로서 취약집단인 어린이(0~9세)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면밀히 조사. - 배출량은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고 PRTR 자료 활용 시 업종별 조사업체 수가 아닌 배출업체 수를 고려하여 산정. - 건강영향평가는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포함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 【소음·진동】 - 인근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진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수질】 - 주변 지역의 과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하천의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됨. - 명확한 수질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연계처리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의 물 흐름이나 우수배제특성에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 수리수문학적 검토와 평가 포함. 이와 연계하여 폐수종합처리장 방류수의 유출경로 및 방식을 더불어 고려해야 함. - 수환경 범위에 대하여 아라천 수질개선과 연계하여 항목을 14개이상 그리고 중금속 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수환경 sample 채취 지점 또한 북측 및 동서로 1곳씩 추가 필요.	-
4)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해당되지 않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원 사항을 면밀히 파악.	-
6) 기타의견	
- 동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당해 지역은 반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므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평가서 작성이 필요. 《주민대표 심의위원》 - 검단 왕길동 오류동은 환경이 너무 열악한 지역이며, 현재 금호어울림 금호자이 이편한 현대 품림아이원 안동포 오류동 택지개발 3구역, 5구역 주택이 대거 밀집되어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와 검단일반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오류동 왕길동 주민은 악조건에 살고 있음. 왕길동 산업단지는 현재위치에 절대 반대.	-
□ 행정사항	
- 협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등) 제1항에 의거 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왕길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관 의 건

-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예정지구 일대는 많은 산업용지가 운영 또는 조성중인 지역으로서 추가 공장 건설에 대한 관리(환경영향 등)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 상회 도시기본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산업용지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주변 산업단지의 분할 현황, 환경적 누적영향 등을 예측·평가하여 동 계획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생태계,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괄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악취, 수질, 위생·공중보건(건강영향평가), 소음·진동, 풍·식물상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업부지 및 주변의 경운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이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1)을 참조하여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안은 2개 이상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풍·식물상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추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분원조사(탐상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밀생 보호종 서식현황과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계획지역과 인접하여 김단, 양촌, 학운2·3·4 일반산업단지 등이 입지하고 있고, 대포, 김포3·1·4-1·5·6 일반산업단지, 인천식물산업단지 등이 입지할 예정

이므로, 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의 누적영향을 고려한 항목별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경운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계획지역 하류 수계현황(이용 현황, 수질 상태, 유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대상범위(적·간접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수질변화 등)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 수립
-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분석(경관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행 조사지점,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인접하여 대규모 택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고 계절별 특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인근 경운시설에 미치는 누적영향을 예측·평가(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방법)하여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단,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선정가능 여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이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당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 따른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동 심의의결은 환경영향평가서(요약)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16. 4. 8.

심의위원 하 은 숙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업명 : 왕길 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관 의 건

- 사업지구 인근에 수도권매립지, 김단일반산업단지, 김포랜드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어 대기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지역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음. 특히 사업지구 인근에 오탁지, 김단3도지개발지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기오염 발생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
- 사업지구 주변으로 강장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지구 인근에 김포학운 2·3·4-1·6 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등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 또는 조성예정인 산업단지들을 아우르는 김포랜드리조트가 있으며 김단산업단지까지 합쳐 총 약 605만여㎡ 규모의 초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함
-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의 타당성 파악 및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원(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에 대한 면밀한 영향 예측을 통해 동 사업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 풍상 사항

- 주변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바,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질, 악취, 수질, 건강상 위해물질 등)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사에 수록하여야 함
- 인근 지역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파악

- 풍·식물상: 생태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종다양성이 풍부한 시점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영향 범위를 최대한 고려)과 하류 수계를 포함

○ 대기질 및 기상

- 주변에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절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현황분석(시간별 측정을 실시하여 24시간 평균을 산출, 맑은 날을 대상으로 측정, 학위 현황 측정도 동일하게 적용)을 실시
- 기상자료는 가능한 주변 지역의 365일간의 부지자료 측정자료 등을 활용
- 대기질영향평가는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포함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위생·보건

- 현행조사로서 위생·보건인 어린이(0-5세)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면밀히 조사
- 배출량은 파악의 조건을 고려하고 PRTR 자료 활용 시 열 영향별 조사업체 수가 아닌 배출업체 수를 고려하여 선정
- 건강영향평가는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포함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

- 소음·진동: 인근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진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 수질: 주변 지역의 과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계하천의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명확한 수질현황 파악 및 저감대책(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연계처리 등)을 수립하여야 함

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원 사항을 면밀히 파악

3. 약식평가 선정가능 여부

- 약식평가 대상 아님

2016. 4. 7.

심의위원 김 태 욱

(왕길점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업은 지로서 무삼한 대암지인부를 만져 건로한 후
 황제 개조 자료중 총록히 보사하여 주 필요한 국정행방을
 주 이루어지게 함.

· 약취관리지역, 대가향정지제지역, 대가관리지역, 지역미모
대세향정, 조수가, 향정향

입지적인 부분과 환경영향적으로 기술적인 영향에 더 비중을
환경영향에 대해 환경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세 가지
제부 하고 있다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2016 . 4 . 12 .

협의회 위원 겸 미 겸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는 국지지 (안동지역, 안주시구, 경부 3지구, 경부 5지구 등)의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예정자들에
미발 현경향 및 현경향에 따른 개발의 효과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지 개발)에 따라
국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의 효과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지 개발)에 따라

- 대한항공 생활항공기라 우리 생활속으로 가까이 온 비행기.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즐거워진 국내여행산업의 최우선순위.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

발성되고 있는 양으로 대개로는 수음과 기음(장, 연)은 다 발음되는 음향적 특성을

2016 . 4 . 12 .

협의회 위원 조경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의견서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괄의견

-특정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식이 아닌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으로 사도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산업단지 입지로 정해진 지역임을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수질영향 평가에 대하여
아래는 수질개선과 연계하여
항목을 14개 항목 그리고 중점적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함
[추가 됨]
-수질영향 Sample 채취 지점 또는 부속 및 동선로 1곳씩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항목,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2016. 4. 12.

협의회 위원 장준해 (인)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의견서
(왕길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괄의견

-성동시장은 단순 화학 유출이 아닌 주변 주거지구
환경보전에 의한 친환경 비공해 시설로
-폐수처리 등 고려하여 사업이 정지에 충분한
환경보전 확보 방안 마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대신지역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km는 부설하여,
환경 위해 성도는 같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km 이내
경도, 성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주변 주거 및 환경을 고려 친환경 사업추진
있는 상태로 선정 유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수질영향, 기상영향, 소음·진동, 대기오염, 지질·지형, 수문·수질, 생태·환경영향, 사회·경제영향, 문화·관광영향, 조경·경관영향, 토지이용·토지환경영향,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항목,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조각지대수역, 조각지대, 철수, 시기 등 확대 추가 하여
주변 지역까지 이해관계에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영리지역은 반대의 의견이 반영하고 있는것이므로
주변 지역이나 선제적 대응 추진이 중요하다고
평가서 작성에 있음,

2016. 4. 12.

협의회 위원 장준해 (인)

2016년 2월 20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결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심 의 결 과

- 공원녹지가 대부분 완충녹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공원 규모에 대한 확대 조정 필요
- 생태자원의 조사를 단순히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병행하여 생태자원도 조사를 추진하기 바람
- 약취관리 지역은 아니나 주변이 수도권권밀집지역 약취 유발지역으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취 조사 저점의 확대 필요 (기타사항은 별도 조사)
- 폐수처리장의 적정규모와 부지 면적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필요 (결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사례)
- 화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기술 필요
- 인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필요 (기타사항은 별도 조사)
- 산단운영에 따른 약취, 유해물질배출 등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입주업체의 업종 제한을 검토하기 바람
-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 운영계획과 환경오염 저감방안 마련
 - 도로 환경영향평가 추가 필요
 - 05년 평가 불가!

2016. 4. 29. 2016년 2월 20일
심의회원 조경희

✓ $\alpha_1, \alpha_2, \alpha_3$ are linearly independent